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98
------	------

2017. 11. 28.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0월 31일, 김선갑의원(찬성의원 10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11. 2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김선갑 의원)

- 서울연구원 수행 사업 중 하나로 의회 의정 및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의회 의정 관련 연구·조사 업무 위탁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서울연구원의 수행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의회 의정 및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사업 수행 범위를 확대하고 의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통해 의정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서울연구원 개요

- 서울연구원은 1992년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책을 연구·개발해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였음.
- 현재 1본부 6실 3센터에 연구직 74명을 포함해 137명의 정규직원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위촉직원 163명을 포함해 모두 300명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표〉 서울연구원 인력 현황

□ 인력 : 총 300명(2017년 11월 현재)				
- 정규직원 : 137명				
계	임원	연구직	일반·전문직	공무직
137	1	74	46	16
※ 휴직자 3명(연구직2, 일반직1) 제외				
- 연구과제 수행 위촉직원 : 163명				
계	박사급 연구원	석사급연구원		연구보조원
		기간제연구원	과제임용 연구원	
163	17	47	93	6

- 또한, 출연금과 수탁사업비를 포함한 자체수입 등 연간 약 300억원의 예산을 통해 약 250여건의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다. 서울연구원 사업 수행범위의 확대(안 제3조각 호 및 안 제7조)

- 최근 5년간 서울연구원은 다양한 형식으로 모두 1,112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시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수행한 연구는 12개에 불과함.
- 특히, 이들 서울시의회와의 협업연구들 가운데 시정현안외에 의회의 직접적인 현안과 관련된 연구는 2016년 수행한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평가할 만함.

〈표〉 서울연구원 최근 5년 연구 수행 현황

(2017.11.21.기준, 단위:건)

구 분	계	자체연구					협력연구	수탁연구
		소계	정 책	기 초	현 안	수시		
총계	1,112	715	260	120	169	166	69	328
'17년	216	161	51	24	28	58	11	44
'16년	263	170	57	31	24	58	34	59
'15년	248	147	46	28	23	50	24	77
'14년	198	120	47	22	51	-	-	78
'13년	187	117	59	15	43	-	-	70

〈표〉 최근 5년간 서울시의회와의 연구 협업실적

(2017.11.21.기준, 단위:건)

과 제 명	연 구 부 서	연 구 기 간
서울시 교통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 관리방안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4~2017.12
서울시민 행복증진 방안 연구	기획조정본부	2017.3~2017.12
일본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5~2017.10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도시경영연구실	2016.3~2016.9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한 선제적 기반구축 연구	안전환경연구실	2016.4~2016.11
온톨로지기반 청소년 직업 검색/추천 플랫폼 개발을 위한 isp연구	도시사회연구실	2016.4~2016.8
안전형평성 분석을 통한 안전증진전략연구	안전환경연구실	2016.4~2016.9
서울시 무인기(드론) 도입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연구	도시정보센터	2016.4~2016.10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기획조정본부	2015.6~2015.11
서울시 청소년 관련 예산분석 및 정책사업 정비방안 연구	도시사회연구실	2015.10~2016.1
여행자 체류세금 신설 및 실행방안 연구	미래사회연구실	2014.11~2015.1
서울시1인가구 대책 정책 연구	미래연구센터	2014.12~2015.2

-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은 서울연구원의 사업 수행 범위에 명시적으로 의회 의정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속히 변경하는 상황에서 의정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서울연구원의 사업범위에 기존의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연구외에 서울시의회와 의정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조치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서울연구원의 사업범위 확대의 당위성과는 별도로 이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의 적절성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논의가 요구됨.
- 우리 「헌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
- 따라서, 우리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 행정에 관한 연구에는 묵시적으로 의회와 의정에 관한 연구가 포함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을 것임.
- 결국, 개정안과 같이 서울연구원의 사업 수행범위에 의회와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는 문제는 조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해 해당 분야 연구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는 문제와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취지를 이해하는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629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3조제1호 중 “시 행정”을 “시 행정 및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4호 중 “시 행정”을 각각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으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시는 시정과”를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서울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